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수리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군

내 용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 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같은 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이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연도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품목제조 보고를 받은 해당 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 II. 제4.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르면, ‘아황산나트륨’은 절임식품(절임류)에 이산화황으로서 0.030g/kg (이산화황으로서 0.003%이하)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며, 소브산칼륨(소르빈산칼륨)은 절임식품(절임류)에 소브산으로서 1.0g/kg 이하(소브산으로서 0.1%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식품첨가물공전의 품목별사용기준’에 따라 적정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반려,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군(○○○○과), ○구청(○○과)는 아래 [표]와 같이 ○○군 ○○면 소재 (주)○○○푸드(대표 ○○○),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주)○○○푸드(대표 ○○○)가 식품첨가물인 ‘아황산나트륨’, ‘소브산칼륨(소르빈산칼륨)’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제조한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무말랭이-3’ 등 3건의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미준수 식품 명세

관할기관	업체명 (대표자)	품목_명	품목유형	보고일자	원재료명(비율포함)	감사사항
○○군	(주)○○○ 푸드 (○○○)	○○무 말랭이-3	절임류	‘16. 6. 2.	무말랭이 62%, ~~~~~~ ~아황산나트륨 0.02%	이산화황 사용 기준(0.003%) 위반 ※ 변경(‘18.3.6.)
		○○무 말랭이-2	절임류	‘16. 6. 2.	무말랭이 62%, ~~~~~~ ~아황산나트륨 0.02%	
○구 * 영업소 소재지변경(現 ○구, ‘17.4.12)	(주)○○○푸 드 (○○○)	○○○ ○○○ 장아찌	절임류	‘17. 2. 2.	케일 60.9%, ~~~~~~ 빈산칼륨(소브산칼륨)0.6% ~소르	소브산 사용 기준 (0.1%) 위반 ※ 중단(‘18.2.28.)

※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

[주의] 식품 품목제조보고 수리 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